



국내 포장재 3R 추진 정책

The Recent Policy of 3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장재'를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재가 사용된 후 폐기하는 단계가 되면 포장폐기물이 된다.

포장폐기물의 경우도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곧 제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포장폐기물은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포장폐기물은 에너지를 회수하기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감량화(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 등 3R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에 따라 포장폐



이 찬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기물의 3R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97년에 제정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서 포장용기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폐기물부담금제도, 쓰레기 종량제 및 과대포장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리필제품 생산 권고 및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로 인한 인체 및 자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함유를 규제하고 있다.

이중 포장폐기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포장재질 규제와 관련, 1993년 9월부터 완구인형 및 모든 종합제품에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2001년부터는 PVC 수축 포장재와 PVC를 첨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2004년부터는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하여도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포장방법 규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자안에 남은 공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

고, 여러번 포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식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부외 품, 의류, 종합제품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성수지, PVC, 합성섬유 재질로 된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축소(-5%)하고, 반면 펠프몰드 등 종이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확대(+5%) 적용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의 대체를 유도하고 있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계란반침·팩, 사과·배 반침접시, 면류용기, 농·축·수산부류 반침접시,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 등 5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용 완충재를 줄이기 위하여 소형·경량제품인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질대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줄이기 방법을 연차별로 규정한 일정규모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는 발포폴리스틸렌(EPS)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큰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보다 환경친화적인 재질의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7